

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7] <개정 1996.6.20>

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(제28조제3항관련)

저장소의 종 별	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	동일 저장소 내의 저장금지화약류
1 급 저 장 소	1. 화약(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) 2. 폭약(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) 3. 화공품(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) 4. 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	1.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(공포탄·미 진동파쇄기·도폭선· 전기도화선 및 도 화선과 포장된 실 탄제외)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 서는 아니된다. 2. 신호염관·신호화 전 및 꽃불류와 이 의원료용 화약 및 폭약은 동일한 저 장소 내에 다른 화 약류와 함께 저장 할 수 없다.
2 급 저 장 소	1. 화약(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) 2. 폭약(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) 3. 도폭선·전기도화선·도화선 및 미진동파 쇄기 4. 공업뇌관·전기뇌관 및 타정총용공포탄	화약 또는 폭약과 공 업뇌관·전기뇌관·타 정총용공포탄 및 미 진동파쇄기를 동일 한 저장소에 저장하 여서는 아니된다.
3 급 저 장 소	1. 화약(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을 제외한다) 2. 폭약(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의 원료용 폭약을 제외한다) 3. 화공품(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를 제외한다) 4. 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	1. 화약 또는 폭약과 화공품을 동일한 저장소에 저장하여 서는 아니된다. 다 만, 저장소 내에 격벽을 설치하여 이를 저장할 수 있 다. 2. 신호염관·신호화 전 및 꽃불류와 이 의원료용 화약 및 폭약은 동일한 저 장소 내에 다른 화 약류와 함께 저장 할 수 없다
수중저장소	1. 무연화약	무연화약과 제2호의

	2. 트리니트로트투엔, 트리메치렌, 트리니트로아민 및 이들의 혼합물과 이들을 주로 하는 폭약	화약류를 동일한 저장소 내에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.
실탄저장소	실탄 및 공포탄	
꽃 불 류 저 장 소	1. 신호염관·신호화전·꽃불류·전기도화선 및 시동약 2. 신호염관·신호화전·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·미진동파쇄기	
장난감용꽃 불류저장소	장난감용꽃불류	
도 화 선 저 장 소	도화선 및 전기도화선	
간이저장소	1. 타정총용공포탄 2. 화약·폭약·도화선·공업뇌관 및 전기뇌관 3. 신호염관·신호화전 및 꽃불류와 이의 원료용 화약 및 폭약	3급저장소에 준한다.